##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43

발의연월일: 2024. 11. 5.

발 의 자: 박성준 • 이기헌 • 황정아

진선미ㆍ허 영ㆍ정성호

강유정 · 모경종 · 한민수

김성회 • 추미애 • 이훈기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여객자동차, 화물자동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나,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장치의 장착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.

그런데 최근 시청역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해당 운전자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밝혀지며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 고령운전자는 49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고령운전자 안전운전은 교통안전의 핵심 과제로 볼 수 있음.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고 사고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장치의 보급이 필요한 시점임.

이에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또는 페달영상기 록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전 관련 장치의 보급을 촉진하고 교통안전 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55조의4 신설).

##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5조의4(고령운전자에 대한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장착 지원) ① 국가등은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(이하 "고령운전자"라 한다)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비상자동제동장치 또는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거나, 장착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(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,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55조의4(고령운전자에 대한 비
	상자동제동장치 등 장착 지원)
	① 국가등은 운전면허를 받은
	65세 이상인 사람(이하 "고령
	운전자"라 한다)이 국토교통부
	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
	비상자동제동장치 또는 페달영
	<u>상기록장치를 장착하거나, 장착</u>
	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예
	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
	(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 한정
	한다)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
	<u>있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
	기준,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
	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